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(이하 “정원” 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청 : 892 명
2. 직속기관 : 840 명
4. 사업소 : 369 명
5. 출장소 : 230 명

제3조(직급별 정원의 규정) 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북도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.
- ③ (한시정원)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 및 사업소에 두는 정원 중 본청 통합시준비요원 1명은 1995년 2월 28까지, 본청 정책보좌관 3명과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 정원 25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,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정원 20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